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5. 11.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요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요금 감면 및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34조제4항)

-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의 사유 : 3회 이내 분할

나. 요금 등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정비(안 제41조)

- 확대 : 요금 전자 고지 신청자(안 제41조제1항제11호)
- 정비 :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안 제41조제1항제2호)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지원 대상 개정

다.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의 해제 시 수수료 징수 폐지,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안 제44조제2항)

라.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1조~제6조의4, 제10조~제14조, 제16조~제5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수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공급조건등”을 “그 밖의 공급조건 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전분리등”을 “수전 분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압설비 등”을 “가압 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인등”을 “관리 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용여부”를 “사용 여부”로, “수도 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건축단위”를 “건축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구미시의”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을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호이상”을 “5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시공중”을 “시공 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을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개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과손개소”를 “과손 개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동일지번”을 “동일 지번”으로, “분리계량”을 “분리 계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의 후단 중 “제27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7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과태료등”을 “과태료 등”으로, “체납 당사자”를 “체납 당사자”로, “동일장소”를 “동일 장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흡수정 설비등의”를 “흡수정등의 설비”로, “이해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내”를 “건물 내”로, “불명확 할”을 “불명확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역외”를 “구역 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일택지”를 “동일 택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리계량”을 “분리 계량”으로, “분리가능)”을 “분리 가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을 “전용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동일관리”를 “동일 관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전용급수설비”를 “전용 급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시”를 “설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물내”를 “건축물 내”로, “주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문건설업중”을 “전문건설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천재지변,도로”를 “천재지변, 도로”로, “1일이내”를 “1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중 “서명날인 하여야”를 “서명날인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신설급수공사는 대지경계”를 “신설 급수공사는 대지 경계”로, “교체공사시”를 “교체공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조공사시 구경확대”를 “개조공사 시 구경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설비중”을 “급수설비 중”으로,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관리의무”를 “관리 의무”로, “건물소유자”를 “건물 소유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사비이외”를 “공사비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제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설급수공사비”를 “신설 급수공사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축건물”을 “신축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신청구경”을 “급수신청 구경”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납할필요”를 “선납할 필요”로, “수있으며”를 “수 있으며”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거분할”을 “의거 분할”으로, “납부기간내”를 “납부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기내”를 “납기 내”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준공후”를 “준공 후”로, “정산시”를 “정산 시”로, “정산후”를 “정산 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을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 사용자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원인자”를 “공사 원인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원인자”를 “공사 원인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해관계인등”을 “이해관계인 등”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후 3년이내”를 “준공 후 3년 이내”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보수”를 “하자 보수”로, “하자확인”을 “하자 확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정 하는”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자보증방법”을 “하자 보증 방법”으로, “국·공채등”을 “국·공

채 등”으로, “기타 하자보수보증”을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인정부과 하여야”를 “인정부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를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로, “대지경계”를 “대지 경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을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급수용도”를 “급수 용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을 “가구 분할 평균 사용량”으로, “할때”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관계”를 “수도 관계”로, “급수중단등”을 “급수 중단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을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설소화용”을 “사설 소화용”으로, “소방연습용이외”를 “소방 연습용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설소화용”을 “사설 소화용”으로, “입회아래”를 “입회 아래”로, “10분이상”을 “10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수도계량기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를 “수도 계량기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로, “교체등”을 “교체 등”으로, “설치 등”을 “설치 등”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관리의무”를 “관리 의무”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설비중”을 “급수설비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설비중”을 “급수설비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한다.

2. 주 계량기·보조 계량기

3. 주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의 보호통

제25조제1항 중 “권리의무”를 “권리·의무”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 불가피한”을 “긴급·불가피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공업용수”를 “전용 공업용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를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급수중지”를 “급수 중지”로 하고, “구경별정액 요금을 과징 한다”를 “구경별 정액요금을 과징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분양시”를 “분양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3개월이상”을 각각 “3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급수중지”를 “급수 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있을 때”를 “있을 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등”을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수처분원인”을 “정수 처분 원인”으로, “부도등”을 “부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년 6회이상”을 “연 6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누수”를 “지하 누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요금은[별표 2]”를 “요금은 별표 2”로, “요금과[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을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업종구분은[별표 3]”을 “업종 구분은 별표 3”으로, “업종구분”을 “업종 구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업종적용”을 “업종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업종구분”을 “업종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계량을”을 “보조 계량을”로, “보조계량기”를 “보조 계량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가구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구경별정액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시사용량”을 “수시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 하계”를 “부득이하계”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로, “수도사용량”을 “수도 사용량”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명확 할”을 “불명확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세대구성”을 “세대 구성”으로, “평균사용량”을 “평균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5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일계량기”를 “단일 계량기”로 하고, “가구별사용료”를 “가구별 사용료”로 하며, “단일계량기”를 “단일 계량기”로 하고, “같다)이상”을 “같다) 이상”으로, “사용호수”를 “사용 호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 받을”을 “적용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사용량중”을 “사용량 중”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본문 중 “요금조정”을 “요금 조정”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결”을 “시험 결”로, “허용공차”를 “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등 필요한 제비용은 시험 결과허용공차”를 “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및 탈부착 등 필요한 제 비용은 시험 결과 허용오차”로, “완료후”를 “완료 후”로, “수도사용료”를 “수도 사용료”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매월 납으로 하

고, 납부 마감일”로, “납부마감일 7일전”을 “납부 마감일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있다”를 각각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자체관리”를 “자체 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 납부 요청 시, 요금을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과도한 수도사용으로 인해 당월 요금이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의 2배 이상일 경우
2. 제41조의2에 따른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액요금은[별표 4]”을 “정액요금은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중지”를 “급수 중지”로, “정수 처분한”을 “정수처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경별정액 요금부”를 “구경별 정액요금 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부 받은”을 “기부받은”으로,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할수”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체납일수”를 “체납 일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체납일수/월력일수)”를 “(체납 일수/월력 일수)”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 고지로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수도납입고지서로 하며 타회계”를 “상수도 납입고지서로 하며 타 회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납부독촉”을 “납부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타회계”를 “타 회계”로, “일정수수료”를 “일정 수수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하여 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시급수”를 “일시 급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선 하고자”를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선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요금납부”를 “그 밖에 요금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부방법 기타”를 “납부 방법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급수종료 후 상·하수도요금”을 “급수 종료 후 상·하수도 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 관리”를 “보관·관리”로 한다.

제40조 중 “[별표 5]각호의 1”을 “별표 5의 각 호”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을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 가장”으로, “정한자”를 “정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제41조제1항제8호 중 “주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요금부과”를 “요금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다자녀가구”를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  
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전자 고지를 신청한 자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제2항”을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  
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경기간”을 “감경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  
법」 제2조”로, “수도사용량”을 “수도 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을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으로, “누  
수부분”을 “누수 부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수도관리상”을 “수도 관리상”으로, “설비등”을 “설비  
등”으로, “건물소유주”를 “건물 소유주”로, “구경절하등”을 “구경절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는자”를 “지정하는 자”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물소유주”를 “건물 소유주”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초과 할수”를 “초과할 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급수번호를 명기한”을 “급수 번호를 명확하게 적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급수표지”를 “급수 표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계량기파손”을 “계량기 파손”으로, “경과후 2월이상”을 “경과 후 2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년 6회이상”을 “연 6회 이상”으로, “정수 처분”을 “정수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 계량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이외”를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수 처분된”을 “정수처분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규정 또는”을 “규정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정급수”를 “부정 급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징제도”를 “과징 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방법”을 “지급 방법”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 계량기의 훼손, 분실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급수사용자”를 “급수 사용자”로, “훼손·망실”을 “훼손·분실”로, “과

손 한”을 “과손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을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훼손한자는 지체없이”를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로, “누수등”을 “누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훼손자”를 “시설물 훼손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5배이내”를 “5배 이내”로,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을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으로, “산출방법”을 “산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를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기타 요금”을 “그 밖에 요금”으로, “사기 기타”를 “사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등”을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을 “(수도 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를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로, “송달업무등”을 “송달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000만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탁금예치 또

는 담보설정등”을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방법”을 “처리 방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관하여는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5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징수,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규정,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5]

제수수료(제40조 관련)

1. <삭 제> (2009.06.09)

2. <삭 제> (2009.06.09)

3. <삭 제> (2009.06.09)

4. 제33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 까지 14,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1,000원

단, 수도미터기 시험수수료가 변동될 시에는 시험 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삭 제>

6. <삭 제> (2009.06.09)



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7. 삭 제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삭 제

10. (생 략)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구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 관리인 등 -----  
-----  
-----.

8. -----  
-- 사용 여부-----  
-----  
---- 수도 계량기-----  
-----  
-----.

10. (현행과 같음)

11. -----  
----- 건축 단위-----.

12. -----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3조(급수구역) ① -----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  
----- 시장이 고  
시한 급수 가능 -----.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생략)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② -----  
--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5호 이상 -----  
-----
3. (현행과 같음)
4. -----  
----- 시공 중-----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개체 등 -----  
-----
3. -----  
-- 파손 개소-----  
-----

4. (생략)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채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의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삭제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비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5. ----- 동일 지번 -----  
-----  
분리 계량-----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  
-----  
----- . -----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과태료 등  
-----  
-----  
----- 채납 당사자 -----  
----- 동일 장소-----  
----- .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 흡수정  
등의 설비 -----  
-----  
----- 이해관계인-----  
----- .

⑤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건물내 배관의 분리를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생략)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2개 업종만 분리가능) 이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⑤ -----  
----- 각 호-----  
-----.

1. --- 건물 내 -----  
불명확할 --
2. --- 구역 외 -----  
-----  
-----  
-----
3. (현행과 같음)

⑥ -----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  
인-----.  
-----  
-----  
-----  
-----.

1. 동일 택지 -----  
-----  
--
2. -----  
-----  
----- 분리 계량-----  
----- 분리 가  
능) -----  
-----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생략)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의 경우 수도권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승인한다.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2(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 전용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동일 관리 -----  
-----.  
----- 제  
외한다.

제6조의3(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  
-----  
-----  
----- 단지 내 -----  
----- 전용 급수설비  
-----.

- ③ ----- 신청 전  
-----  
-----  
----- 관계 공무원-----  
-----  
-----.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10조 (공사의 시행) ① (생략)

② 급수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지내 -----  
-----  
----- 단지내 -----  
-----.

③ -----  
----- 설치시 -----  
-----  
-----  
-----.

④ ----- 건축물내 -----  
-----  
-----  
주 계량기 -----  
-----.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전문건설업 -----  
-----

자라야 한다.

③ (생략)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일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종료한 일로부터 1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는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3일 이내-----  
-- . --- 천재지변, 도로-----  
-----  
-----  
----- 1일 이  
내-----.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준공검사등) -----  
-----  
-----  
-----  
-----  
-- 서명날인하여야 -----.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  
----- 신설 급수공사는 대지 경계-----  
-----  
-----  
-----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구 경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

④ (생략)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금액으로 한다.

④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교체공사 시-----  
-----.

② ----- 개조공사 시 구 경 확대-----  
-----

③ 급수설비 중 -----  
----- 수도 계량기-----  
-----  
----- 관리 의무-----  
----- 건물 소유자-----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사비 이외-----  
-----.

③ -----  
----- 실제 금액-----.

④ ----- 신설 급수공사비-----  
-----.  
----- 신축 건물 -----  
-----.

1. (현행과 같음)

2. 정액제 급수공사비 대상은  
급수신청구경 15mm 이하로 한  
다.

제14조 (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  
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있으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  
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  
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  
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  
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 규  
정에 의거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  
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균  
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2. -----  
급수신청 구경 -----  
--.

제14조(공사비의 납부) ① -----  
-----  
----- 지정기  
일 내-----.  
----- 선납할 필요-----  
----- 수 있으며-----  
----- 「의료급여법」-----  
----- 범위 안-----  
-----.

② -----  
----- 지정  
기일 내-----  
-----.  
----- 의거 분할-----  
-----  
----- 납부기간 내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기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는 2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가산금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흡수정등의 설비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들은 흡수정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공사

-----  
-----.

③ ----- 납기내 -----  
-----  
----- 범위안-----.

④ ----- 준공후 ----- 정산시 -----  
-----  
정산후 -----.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  
-----  
-----.

제17조(흡수정등의 설비설치) ① ----- 수도사용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  
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  
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  
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  
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  
로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  
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  
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④ (생략)

----- 공사 원인자-----  
----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그 밖의 -----  
-----  
-----  
-----  
-----  
-----.

② ----- 공사 원  
인자-----.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이해관계인 등----- 대해서  
는 -----  
-----.

② ----- 준공 후 3년 이내-----  
----- 대해서는 -----  
-----.

③ 하자 보수-----  
----- 하자 확인-----  
----- 대해서는 -----  
----- 정하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2. (생략)
-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명

⑤ ----- 하자 보증 방법-----  
-----  
----- 국·공채 등-----  
-----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  
-----  
-----.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  
-----  
----- 수도 계량기-----  
-----  
-----  
-----  
-----  
-----  
----- 대해서는 인정부과하여야 -----.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  
----- 대지 경계-----  
-----  
-----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  
-----  
-----.

- 1.·2. (현행과 같음)
- 3. 급수 용도-----

의가 변경될 때

4. ~ 6. (생략)

7.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① 삭제

②·③ (생략)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

4. ~ 6. (현행과 같음)

7. -----  
----- 가구분할 평균 사용량----- 할 때

② -----  
----- 수도 관계  
-----  
----- 급수 중단 등  
-----.

제2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  
소방 연습용 이외-----  
-----.

② 사설 소화용 -----  
-----  
----- 입회 아래 -----  
10분 이상-----  
-----.

제24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도 계량기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  
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  
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  
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생략)

제24조의2 (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중 시의 소유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  
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생략)

제2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

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

----- 교체 등-----

----- 설

치 등----- 아니 된

다.

③ ----- 관리의무-----

-----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

-- 각 호-----.

1. ----- 주 계량기-----

-----

2. 주 계량기·보조 계량기

3. 주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

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

--- 각 호-----.

1. 주 계량기 -----

2. (현행과 같음)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권리·의무-----

-----

-----.



(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의 3개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6. 제44조제1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

-----  
----- 대하여는 -----

----- 분양 시-----

③ ----- 각 호-----

1. ----- 3개월 이상 -----

2. ----- 3개월 이상 -----

3. ----- 급수 중지 -----

4. -----

----- 있을 때 -----

5. 도시계획사업 등 -----

6. -----

----- 정수처분 원인 -----

을 해소하지 않을 때와 분  
도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곤  
란한 경우

7.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  
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  
유자등로부터 징수한다.

제29조 (요금) ① 요금은[별표 2]  
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  
과[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30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  
용을 위한 업종구분은[별표 3]  
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  
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  
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

----- 부  
도 등-----

7. ----- 연 6회 이상 -----

④ -----  
-----  
----- 지하 누수 -----  
-----.

제28조(요금의 징수) ① -----  
----- 소  
유자 등-----.

제29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 요금  
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  
----- 업종 구분은 별표 3  
----- 업종 구분-----.  
-----  
업종 적용-----  
-----.

② -----  
-----

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

----- 업종 구  
분-----

----- . -----

----- 보조 계량 -----

----- 보조 계량기-----

-----

-----

----- . -----

③ -----

2가구 이상-----

-----

----- . -----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

-----

----- 구경별 정액요

금-----

----- . -----

② -----

-----

----- 수시 사용량-----

-----

----- . -----

③ -----

----- 부득

이 하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  
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  
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2조 (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  
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  
을 때

② 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  
치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이 되  
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 요  
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  
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이하계 -----  
----- 5일 이내--  
-----.

④ -----  
----- 2개 이상의 수도 계  
량기----- 수  
도 사용량-----  
-----.

제32조(사용량의 인정) ① -----  
----- 수도 계량기-----  
-----, ----- 각 호-----  
-----.

1. 수도 계량기-----  
--
2. ----- 불명확할 --
3. 그 밖에 -----  
---

② -----  
----- 세대 구성-----  
----- 평  
균 사용량-----.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③ -----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등 필요한 제비용은 시험 결과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후 징

⑥ -----  
----- 요금 조정 -----  
-----  
-----  
-----  
-----  
-----  
-----  
-----  
-----  
-----

제33조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  
-----  
-----  
-----

② ----- 시험 결과 -----  
----- 허용공차 -----  
-----  
-----  
-----  
-----  
-----  
-----  
-----  
-----

③ ----- 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및 탈부착 등 필요한 제 비용은 시험 결과 허용공차 -----  
-----  
----- 완료 후 -----

수하거나 익월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부에 의하여 자체관리 징수한다.

<신 설>

----- 수도 사용료-----  
-----  
-----.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  
---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  
----- 납부 마감일 7일 전-----  
-----  
----- 수 있다.

② -----  
-----  
----- 수 있다.

③ ----- 대해서는 -----  
----- 자체 관리 -----  
--.

④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 납부 요청 시, 요금을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과다한 수도사용으로 인해 당월 요금이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의 2배 이상일 경우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 납부독촉 안내문을 동시에 발부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타회계 공과금을 병행하여 고지할 시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 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
3. (생략)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  
-- 납부 독촉 -----  
-----  
--.

④ ----- 타 회계 -----  
-----  
----- 일정 수  
수수료-----  
-----.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 각 호-----  
----- 대해  
서는 -----  
-----  
-----.

1. -----  
----- 일시 급수-----  
-----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선하고자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요금 납부-----  
-----  
-----

② -----  
----- 납부 방법 그 밖에 -----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 후 상·하수도요금을 정산한 후 추정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

----- 급수 종료 후 상·하수도 요금-----

-----.

③ -----  
--- 보관·관리-----.

제40조(제수수료) ----- 별표 5  
의 각 호-----

-----  
-----.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① ----- 각 호-----  
-----  
-----.

1. -----  
----- 소년소녀 가장-----  
----- 정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 3. 삭 제
- 4. ~ 6. (생 략)
- 7. 삭 제
- 8.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  
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  
는 공동주택의 경우(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  
지 않는다)
- 9.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인 다자녀가구
-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신 설>

- 11. (생 략)
-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  
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  
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4. ~ 6. (현행과 같음)
- 8. ----- 주 계량기-----  
-----  
요금 부과-----  
-----  
-----
- 9. -----  
-- 가구
- 10. ----- 장  
애 정도-----  
--

- 11. 전자 고지를 신청한 자
-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  
-----  
-----  
-----  
-----

다. 단, 이 경우 감정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42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의 개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감정 기간-----  
-----.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  
----- 수도 사용량-----  
-----.  
-----  
-----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 누수 부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 수도 관리상 -----  
-----  
-----  
----- 설비 등-----  
----- 건물 소유주----- 구경절하 등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 할수 없다.

제43조 (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② -----  
-----  
----- 지정하는 자-----  
-----  
-----.

③ ----- 건물  
소유주-----  
-----  
-----  
-----.  
초과할 수 ---.

제43조(급수표지) ① -----  
----- 급수 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

② ----- 급수 표지-----  
-----  
-----.

제44조(정수처분) ① -----  
-- 각 호-----  
-----  
-----.

- 1. -----  
--- 계량기 파손 -----  
-----  
----- 경과 후 2월 이상 ---  
-----.

1년 이내에 년 6회이상 체납  
하였던 사용자등과 체납액 징  
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정  
수 처분할 수 있음

2.·3. (생략)

4. 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  
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을 포탈하고자 한자

5. (생략)

6.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  
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 제

9.·10. (생략)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  
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  
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  
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제40조의 정수해

----- 년 6회 이상 -----

-----

-----

----- 정

수처분-----

2.·3. (현행과 같음)

4. 수도 계량기-----

-----

-----

-----

5. (현행과 같음)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

---

7. 정수처분된 -----

-----

9.·10. (현행과 같음)

11.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

행-----

12. 그 밖에 -----

----- 규정이나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에 대해 예고할 때에는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

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 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② (생략)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 각 호----- 대해 서는 ----- 범위 내-----  
-----.

1. 부정 급수-----  
-----  
-----  
-----.

2. ----- 과징 제도  
-----  
-----  
-----

3. 6개월 이상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급 방법-----  
--.

제46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급수 사용자 -----  
-- 훼손·분실-----

주의로 파손 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제47조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을 훼손한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2배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 파손한 -----  
수도사용자등-----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 -----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 누수 등-----

② ----- 시설물 훼손자-----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  
----- 그 밖의 -----  
----- 대하여는 -----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  
내의 과태료를, 급수시설을 부  
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  
수하며,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  
방법은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다.

1. 삭 제

2.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  
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  
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  
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한 자

3. (생 략)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④·⑤ (생 략)

제49조 (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

----- 5배 이  
내-----

-----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

----- 산출  
방법-----

-----.

2.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그 밖에

요금 -----  
-- 사기나 -----

3. (현행과 같음)

③ ----- 경우에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략)

제51조 (이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리 방법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이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60일 이내-----.

③ (현행과 같음)

④ ----- 관하여는 「지방세법」-----.

# 관계법령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 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생략)

1. ~ 3. (생략)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상수도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6. ~ 7. (생략)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 ③ (생략)

| 소 관 부 서     |       | 업 무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신 동 희               |
|             | 팀 장   | 이 영 국               |
|             | 담 당 자 | 차 송 이<br>(480-4429) |